■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[별지 제12호서식] < 개정 2025. 12. 29.>

국민연금(간 장애) 소견서

성 명		생년월일							성별	[ ]남 [ ]여

※ 장애상태(년 월 일 현재) (해당 항목에 ∨표 하세요.)

< A표 : 만성 간질환의 증상 중증도 구분표 >

중증도	임 상 증 상	해당 항목
1	1) 난치성 복수가 지속하는 경우	
	2) 4등급의 간성뇌증이 있거나 만성간성뇌증이 있는 경우	
	3)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정맥류 출혈이 있는 경우	
	4) 제1형 간신증후군이 있는 경우	
2	1) 3등급의 복수가 지속하는 경우	
	2) 3등급의 간성뇌증이 있거나 간성뇌증이 반복하는 경우	
	3) 정맥류 출혈이 반복되는 경우	
	4) 자발성세균성복막염이 반복되는 경우	
	5) 제2형 간신증후군이 있는 경우	
3	1) 2등급의 복수가 지속하는 경우	
	2) 1,2등급의 간성뇌증이 있는 경우	
	3) 정맥류 출혈이 발생하였거나 정맥류 출혈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	
	4) 자발성세균성복막염이 발생하였거나 자발성세균성복막염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	
4	1) 1등급의 복수가 있는 경우	
	2) 정맥류가 존재하는 경우	
	3) 합병증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던 경우	

< B표 :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(Child-Pugh score) > (※ 해당 항목에 점수 기재하세요.)

구 분	1점	2점	3점	해당 항목
혈청 빌리루빈(mg/dL)	<2.0	2.0~3.0	>3.0	
혈청 알부민(g/dL)	>3.5	2.8~3.5	< 2.8	
프로트롬빈시간연장(초)	<4	4~6	>6	
INR	<1.7	1.7~2.3	>2.3	
복수	없음	1등급 또는 2등급	3등급 또는 난치성	
간성뇌증	없음	1등급 또는 2등급	3등급 또는 4등급	

※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(Child-Pugh score) A등급은 5~6점, B등급은 7~9점, C등급은 10점 이상으로 분류한다.

< C표 : 일반상태 구분표 >

구 분	일 반 상 태	해당 항목
1	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,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(가사, 사무 등)은 할 수 있다.	
2	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% 이상을 일어나 활동할 수 있다.	
3	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% 이상을 누워 있다.	
4	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.	

간이식 수술일	년 월 일
기타 의사소견	

※ 최근 3개월 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(예, 검사결과, 의무기록 등)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의료기관 명칭: 의사면허번호: 전문과목: 의사 성명: (서명 또는 인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